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규정 제86호

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규정 공포

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. 10. 17.

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원장

소속사업단<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역지원기관> 운영규정

제정 2021. 2. 24.(규정 제39호)
개정 2023. 2. 23.(규정 제77호)
개정 2023. 5. 30.(규정 제81호)
개정 2023. 9. 14.(규정 제86호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(이하 '재단'이라 한다)내에 설치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(이하 '광역지원기관'이라 한다)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2.23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광역지원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목적) 광역지원기관은 지역사회 취약 노인의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및 안전망 구축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주요사업) 광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(이하 '수행기관'이라 한다.) 운영관리 및 지원<개정 2023.2.23.>

② 수행인력 교육 지원<개정 2023.2.23.>

③ 제공 현황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 지도·점검, 컨설팅 등 진행<개정 2023.2.23.>

④ 수행기관 사업 평가 지원<신설 2023.2.23.>

⑤ 사업 관련 자료 취합 및 사업실적 관리<개정 2023.2.23.>

⑥ 지역자원 발굴·연계, 후원금품 모집·배분

⑦ 컨설팅(합동, 자체, 연계) 진행 및 외부 자문 의뢰<신설 2023.2.23.>

⑧ 실무협의회(수행기관 간담회, 솔루션회의 워크숍 등) 운영<신설 2023.2.23.>

⑨ 기타 정부 및 지자체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개정 2023.2.23.>

제5조(직원의 구분) ① 광역지원기관 내에 팀장 및 전담사회복지사를 두어 업무를 부여한다.<개정 2023.2.23.>

② 팀장은 광역지원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.<개정 2023.2.23.>

③ 전담사회복지사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광역지원기관의 고유 사업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<개정 2023.2.23.>

제6조(임용) ① 직원은 재단 원장이 임명한다.

②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 원장은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직원의 채용은 재단의 시설 및 사업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23. 5. 30.>

④ 직원의 채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며,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및 광주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과 재단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3.2.23.>

⑤ 직원의 채용기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지침(보건복지부, 광주광역시)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한다.<개정 2023.2.23.>

제7조(복무) 직원은 상근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재단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수) ① 직원의 보수는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및 광주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정한다.<개정 2023.2.23.>

② 광역지원기관 직원의 기본급 외의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<별표 1>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.<신설 2023.2.23.><개정 2023.9.14.>

제9조(회계규정의 준수) ① 직원은 광역지원기관 운영비를 정부 및 재단 회계 관련

규정과 보건복지부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, 집행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② E-나라도움 운영상 필요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사용하며 사용범위는 E-나라도움 시스템에 한한다.

③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센터 직원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일계표를 출력하여 관리한다.

제10조(민원처리) 광역지원기관 민원처리는 재단 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칙에 따른다.

제11조(규정 등의 준용)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및 광주광역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23.2.23.><개정 2023. 6. 5.>

제12조(운영규칙 등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3. 2. 23.>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5. 30.>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3. 9. 14.>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<신설 2023.2.23.><개정 2023.9.14.>

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

구 분	지급률 및 지급액	적 용 범 위
시 간 외 근무수당	◦ 지급률 통상임금/209×1.5×시간	◦ 정규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연 차 휴가수당	◦ 지급률 통상임금/209×8시간×미사용일수	◦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종사자 특별수당	◦ 지급액: 월 280,000원	◦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처우개선 수당	◦ 지급액: 월 75,000원	◦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전담 사회복지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(단,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예산 불용액, 집행잔액,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이 가용할 때만 지급)